

정관개정, 두려워하지 말자!

Let's Not Fear Revision of Articles

우리협회의 정관개정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시도되었지만 항상 회장선거가 있는 해의 총회에서 거론되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일부가 회장선출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바람에 개정안 전체가 무산되는 쓰라림이 있었다.

이에 현 집행부는 회장선거가 없는 2006년도 2월 정기총회에서 선거와 관계없이 협회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정관개정안을 상정시켜 대의원들에게 그 뜻을 묻고자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지난 9월 대한건축사협회 이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정관개정안을 검토해왔던 법제위원회에게 정관개정안의 초안 작성을 위임하였다. 이에 법제위원회에서는 2005년 정기총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제출했던 법제위원회와 발전위원회의 공동작성안을 기초로 하여 2박 3일간의 집중적인 토의와 논쟁을 거쳐 지금의 공람 안을 작성하였다.

법제위원회에서 작성한 정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정관의 목적과 사업의 내용이다.

관변단체의 성격을 벗어나 건축의 환경과 미래,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목적의식을 확보하였고 사업의 내용은 국토이용계획, 건축 관련 신문·방송 통신사업과 건축문화전당사업, 남북 건축문화 교류사업 등 미래에 추진할 사업들을 구체화시켰다. 특히 건축문화전당사업은 건축박물관, 자재전시장, 건축 체험관 그리고 모든 건축인들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 연수원 등을 한 곳에 설치하여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중심역할을 추구하는 우리 건축인들의 꿈을 시도하는 사업이다. 또한 남북 건축문화 교류 사업은 장래의 통일에 대비한 건축문화 및 제도에 대한 대비사업으로서 시대적 요청에 의한 것이다. 국토이용계획은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도심의 건

축계획사업을 뛰어넘어서 국토 전체의 효율적인 이용계획까지 건축사들의 영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식적인 외침이며 신문·방송·통신사업은 지금 지방지로 발간되고 있는 건축사전문 신문이나 방송이 아닌 건축문화를 대표하는 전문적인 신문과 방송을 추구하겠다는 우리 건축사들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런 모든 사업들을 지금 당장 시도하지는 못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5년제 출신의 후배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청사진을 펼칠 수 있도록 정관에서 기틀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회장의 직선제 선출이다.

현재는 정회원 20명당 1명으로 구성된 대의원들이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도록 된 간접선거제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정회원들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회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인 선거관리 내용은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정리되었지만 2년마다 치러지는 선거만큼 건축사대회를 겸한 회장선출을 하여 건축사대회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자는 의견과 각 시도 건축사회에 투표장을 설치하여 운영한다는 의견, 비밀투표 보장에 대한 문제해결의 숙제가 있기는 하지만 I.T 왕국에 걸맞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투표 등의 내용들이 예견되고 있다. 우리협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회원들의 참여도가 부족함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에서는 회원들이 협회에 참여하고자 하여도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기껏해야 협회 홈페이지의 회원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정도일 것이다. 내가 직접 뽑지 않은 회장에게 애정과 관심이 있을 리 없고 협회에 대한 소속감을 가질 수 없으므로 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 회장선출의 직선제라는 의견에 많은 회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각 시·도건축사 회장단을 이사회에 참여케 하는 것이다.

직선제와 더불어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이슈를 가지는 안건으로서 워크숍에서도 열띤 찬반 토론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정회를 거듭한 끝에 확정된 안이었다. 지역의 의견전달을 위하여 시·도회장단이 추천한 3명을 이사회에 참여케 하자는 절충안과 이사회와 시·도건축사 회장 회의와는 별도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론이 강하게 거론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도건축사회 회장단 전체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현재의 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현재의 건축계와 우리협회는 극심한 불황속에서 건설사의 설계겸업 요청, 여타 기술사들의 영역확보 요청과 같은 민감한 사안들이 급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배경으로 하여 이사회에서 논의되는 쟁점들을 일선 지휘자격인 시·도건축사회 회장들이 현실에 대한 문제점들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문제점들을 좀 더 피부로 느끼게 하고 그에 따르는 신속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회의의 효율성과 문제점들에 대하여 걱정을 했지만 실제 2005년에는 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의 설명과 대처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도건축사 회장단 회의를 한 달에 한번이상 시행했음을 고려할 때 집행부와 사무처는 거의 같은 내용의 회의를 두 번씩 했다는 결론이니 집행부에서 보는 회의의 효율성은 함께 모여서 한 번의 회의로 끝내는 것이 좋다는 판단인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시·도건축사 회장들의 의견개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져 현장의 목소리가 이사회에 전달하기 어려웠다는 오해들도 있었으며, 이사회와 너무 이원화되어 있었기에 보이지 않는 견제의식이 있었으며 중앙과 지방의 알력이 있는 듯 한 오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시·도건축사회 회장단이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오해들은 모두 불식된다는 것이다. 사실 지금도 이사회에는 지역성을 대표하는 역대 시·도건축사 회장들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 입장을 현역회장이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또한 직선제로 뽑힌 시·도 회장단에게 별도의 강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는데 같은 직선제로 뽑힌 대한건축사협회장과 함께 이사회에서 직접 협회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므로써 지방과 중앙을 하나로 묶는 고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이 있었다.

네 번째는 전문경영을 위한 외부인사 도입이다.

이번 정관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은 상근이사 2명을 이사회에서 선택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에게도 개방하였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는 상근 부회장이 사무처를 관장하고 외부섭외를 전담하고 있지만 슈퍼맨이 되지 않고는 그렇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전문 경영인을 이사로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회원의 전유물이었던 위원회의 위원장도 대외적 능력이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인에게 개방할 수 있는 길을 만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시·도건축사회의 회칙제정을 통한 자율성 확보이다.

지금 현재에도 거의 모든 시·도건축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회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정관에는 그러한 위임조항이 없어서 회칙의 유효성여부가 문제 된 적도 있으며 그에 대한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칙은 이사회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관의 기본적인 목적에 위배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니 법령으로 비교하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섯 번째는 내부 결속력 강화를 위한 규정이다.

정관의 목적과 사업에 회원을 위한 복지사업과 문화사업 등의 혜택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나열되었고 회원의 가장 큰 권리인 회장선출에 대한 참정권을 강화한 반면에 회원의 최대의무인 회비납부에 대한 형평성과 미납자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정관의 의도이다.

집행부는 회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또한 문화적인 혜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회원은 그러한 회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의무규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정관의 기본정신에 따라서 추대회원에 적용되던 회비면제 제도는 회원이라는 공평성의 원칙에서 없애기로 하였으며 추대회원에게는 별도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추대회원에 대한 예우방법을 달리 하였다. 회비미납의 회원에게는 현재의 기간보다 더 긴 유예기간을 주되 그 기간까지도 회비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은 회원에게는 주의, 경고, 권리정지, 제명까지 징계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내용들이 이번 정관개정 주요내용들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100%만족할 수는 없듯이 이 개정안이 회원 모두에게 찬성을 받거나 반대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제위원회에서 사심 없이 우리 대한건축사협회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최선이라고 판단한 내용이라고 알리고 싶으며 시·도 건축사회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사회의 최종결론을 얻어 총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항상 변화는 부담스럽고 불안하며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하지만 그러한 고통 없이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른 단체에 가서 활동할 때에는 필자의 모습이 보수적이라는 말을 듣지만 막상 우리 대한건축사협회에 와서는 너무 개혁적이라는 소리를 가끔 듣는 것을 보면 우리협회의 정체된 일면을 보듯하여 안타까울 때가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원로들께서 직접선거제는 무리라고 단언하거나 시·도건축사 회장단의 이사회 참여는 무조건 안 된다고 주장한 우려를 일부 이해는 하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공청회발표에 나선 최찬환교수의 “가장 엘리트 그룹인 건축사협회에서 직선제를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며 지방과 중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시·도건축사회 회장단의 이사회 참여는 막을 명분도 이유도 없으며 상임이사제를 잘 활용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되새길 필요는 있어 보인다.

우리 대한건축사협회는 지금 어느 위치에 왔는가?

우리회원들의 사기는 어떤가?

우리의 입장에서 더 이상 떨어질 나락이 존재하는가를 자문하면서 최소한의 몸짓이라도 발버둥이라도 하였으면 좋겠다는 건축사들의 의지가 뭉쳐져서 이번 정관개정의 내용이 일치된 마음으로 정리되기를 희망한다. ㉞